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발생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매뉴얼에 따름

2026. 3.

학교법인 정의학원
서울여자대학교
화랑초등학교
서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1.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경영책임자(장관)**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이행 필요**
- 교육부(본부), 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의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 매뉴얼 마련 필요**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조직 및 대응 절차 수립·유지(반기 1회 이상 점검 이행)**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22.1.19)의 세부추진 계획

2.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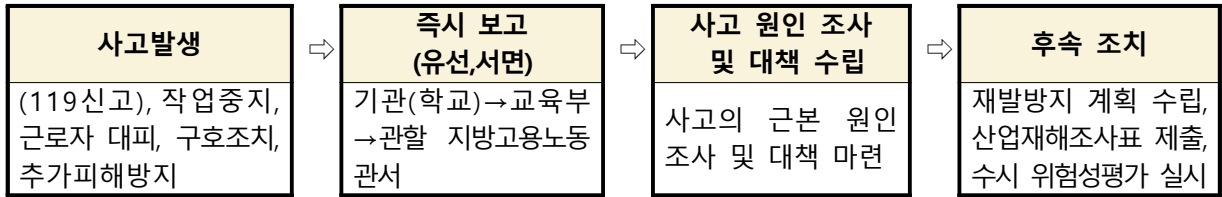
- ❖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 다음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3. 적용 및 업무 기준

- (적용대상) 교육부(본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 (업무기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대비 업무 기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비상사태 대비 조치**
 -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③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조치에 따른 매뉴얼 작성 시 **포함 사항**

- ▶ **작업중지권** 행사, 주요 공정의 안전조치 및 작업장소에서 **대피** 조치
- ▶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의 임무 및 내·외부의 **연락 및 통신체계**
- ▶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및 응급 복구 등 **수습 조치**
- ▶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급박한 위험, 비상사태(예시)** >

▶ **급박한 위험**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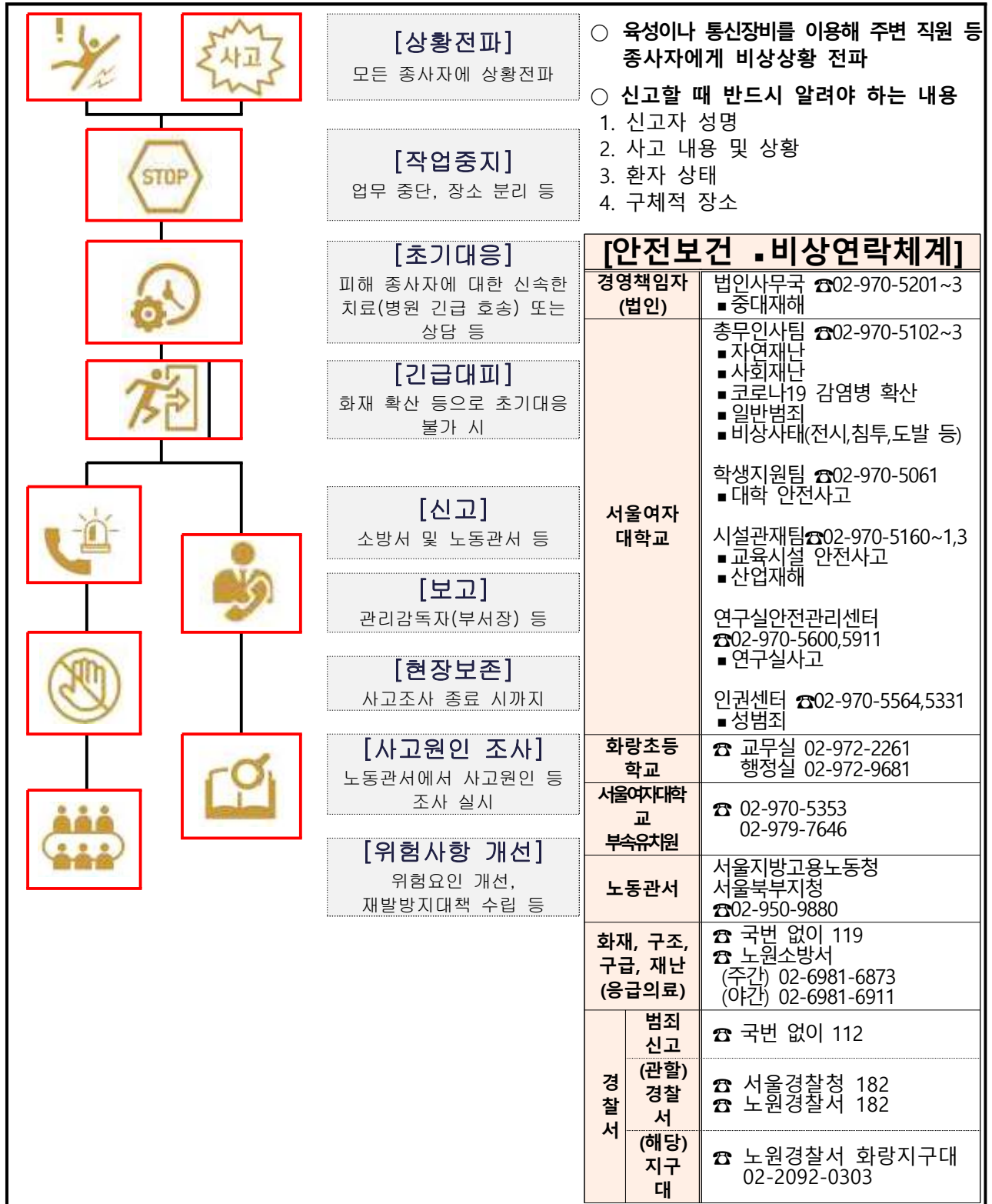
▶ **비상사태**

-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극한 상황
(떨어짐, 넘어짐, 교통사고, 끼임, 베임, 절단, 충격쇼크, 이상온도접촉, 감전, 가스중독, 화재사고,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질식사고)

4.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단계별 조치

< **흐름도** >

- 건강: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종사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상황전파 및 소방서 등 신고
- 화재: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따라 자체 진화조치하고, 어려울 경우 소방서 등 신고 및 신속 대피
- 감전: 피해자가 접촉된 전원 차단 후 구출, 감전자 의식 확인,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및 소방서 등 신고
- 낙상: 어깨를 두드려 의식 확인, 팔 다리 부상 시 부목 고정 등 응급조치 및 소방서 등 신고



1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

- 재해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발신기 작동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해 상황전파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 발생지역(건물, 설비명 등), 사고 종류와 상태, 신고자 소속·성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조치
 - *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근로자 포함), 사업주(관리감독자) 등
 -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 기계·기구도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 가능

2 초기대응(및 비상조치)

- 기관(학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 대응 총괄 지휘
 - 비상사태별 계획에 의해 임무가 부여된 근로자는 자신의 임무 수행
- 관리감독자는 관련기관에 재해 발생 보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인원 동원 협조 요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119 등 긴급 상황 연락과 함께 재해(환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실시
 -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긴급대피

-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기관(학교)에서 정하는 비상대피장소로 긴급 대피 조치

4 신고(보고) 및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서면보고[붙임1]
 - 보고*절차 : 기관(학교)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고용부 서류 제출 기한: 산업재해조사표(발생일로부터 1개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지체없이)
- 작업 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5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작성[붙임2]

-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 마련 시 **근로자의 의견 적극 반영**,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공유
- ※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위험사항 개선 및 후속 조치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7 종결

- 작업 중지 및 현장보존 조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된 때에 종결되며, 근로자 복귀 등 현장의 제반 기능을 정상체제로 전환
- 재해상황 및 작업 중지 종결 시 기관(학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 종결 및 작업 중지 해제 보고
-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 원인 및 처리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5. 사고상황별 대응 조치

1 추락사고(떨어짐, 넘어짐 등)

<p>사고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p>최초발견자</p>
<p>사고자 응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른 현장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 위험하지 않은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 이동 금지 - (외상) 소독 및 필요한 연고를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 보호 - (목뼈 손상)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 머리를 고정,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p>관리감독자</p>

사고현장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 시 재해발생 설비·기계 등의 가동 및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관리감독자	공통 조치 사항
피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2 끼임, 베임, 절단사고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p>[주요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 부위에 출혈량이 많고 출혈 속도가 빠름 - 출혈량이 많은 경우 호흡 불규칙, 얼굴 창백하며 몸이 차가워지는 쇼크 현상 발생 <p>[응급처치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장소로 이송, 출혈방지(지혈대, 압박붕대 등) - 출혈부분을 심장보다 높히고 안정되게 눕힘 - 병원의 수술 대비해서 음료 섭취 절대 금지 - 쇼크방지를 위해 보온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 - 절단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다시 큰 타올로 감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 - 환자와 함께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관리감독자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3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

<p>사고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p>최초발견자</p>
<p>사고자 응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주요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 구토나 헛구역질 증상 발현 - 맥박 및 호흡 불규칙 또는 의식을 잃음 [응급처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부상 없는 경우) 하체를 20~30cm 높임 - (가슴부상으로 호흡 힘든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임 - (의식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 등을 조금씩 음용 - (무의식, 희미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원칙적 음용 금지, 환자가 심하게 원할 때는 거즈에 물을 적셔 입 언저리에 대어줌 	<p>관리감독자</p>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4 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

<p>사고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p>최초발견자</p>
<p>사고자 응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주요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도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 (3도화상) 화상정도가 심하여 신경 및 조직의 파괴까지 동반 [응급처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됨 	<p>관리감독자</p>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5

전기 감전 사고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사고자의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후 상황을 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 후 처치 <p>[주요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 발현 - 전기가 들고 나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함 <p>[응급처치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치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관리감독자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6

가스 누출·중독 사고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및 가스밸브 차단, 사고자의 상태 확인, 응급조치 후 119 및 기관(학교) 관리감독자에게 상황 보고 	최초발견자
사고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동공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2차 재해(폭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p>[주요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통, 구토 경력, 현기증 및 의식불명 <p>[응급처치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즉시 고압산소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관리감독자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7

화재 사고

<p>화재 발생, 상황전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 외치며 주변 동료에게 화재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소화기, 물, 소화전을 이용한 신속 진화 (화재 확산 등 초기 대응 불가 시 긴급 대피) 	<p>최초발견자</p>
<p>초기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확산 통로 차단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 ○ 전기화재 경우 전기 차단, 가스화재 경우 가스밸브 차단 ○ 주위에 인화성·발화성·폭발성 물질 등을 제거 <p>[화재별 소화기 사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A급), 유류(B급), 전기(C급), 주방·식용유(K급) -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 후 -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 ※ 급식실 유류(식용유) 화재 시 조리기구 뚜껑이 닫힌 경우 긴 치공구를 이용하여 덮개를 열고 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및 경찰서로 신고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긴급 대피 	<p>관리감독자</p>
<p>구조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부 화재 시 나가려는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때 문을 열면 안되며 ○ 실내에 연기가 찻을 때에는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음 ○ 두꺼운 담요나 이불, 옷 등을 물에 적셔 피부를 감싸고 ○ 불길의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 옷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 요청 ○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창문 등으로 뛰어 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로 질서 있게 대피 ○ 안전한 장소에서 응급조치 실시 <p>[유독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가스 및 연기 흡입 시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여 보온 유지 및 필요시 인공호흡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 -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 <p>[화상사고 시 응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리았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p>관리감독자</p>

	<p>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거나 물집을 터트리면 안됨 	
<p>복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물, 비품, 장비반출 및 소화작업 후 잔여물 제거 	<p>관리감독자</p>
<p>재발방지 대책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및 환경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 대책반 해체 ○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p>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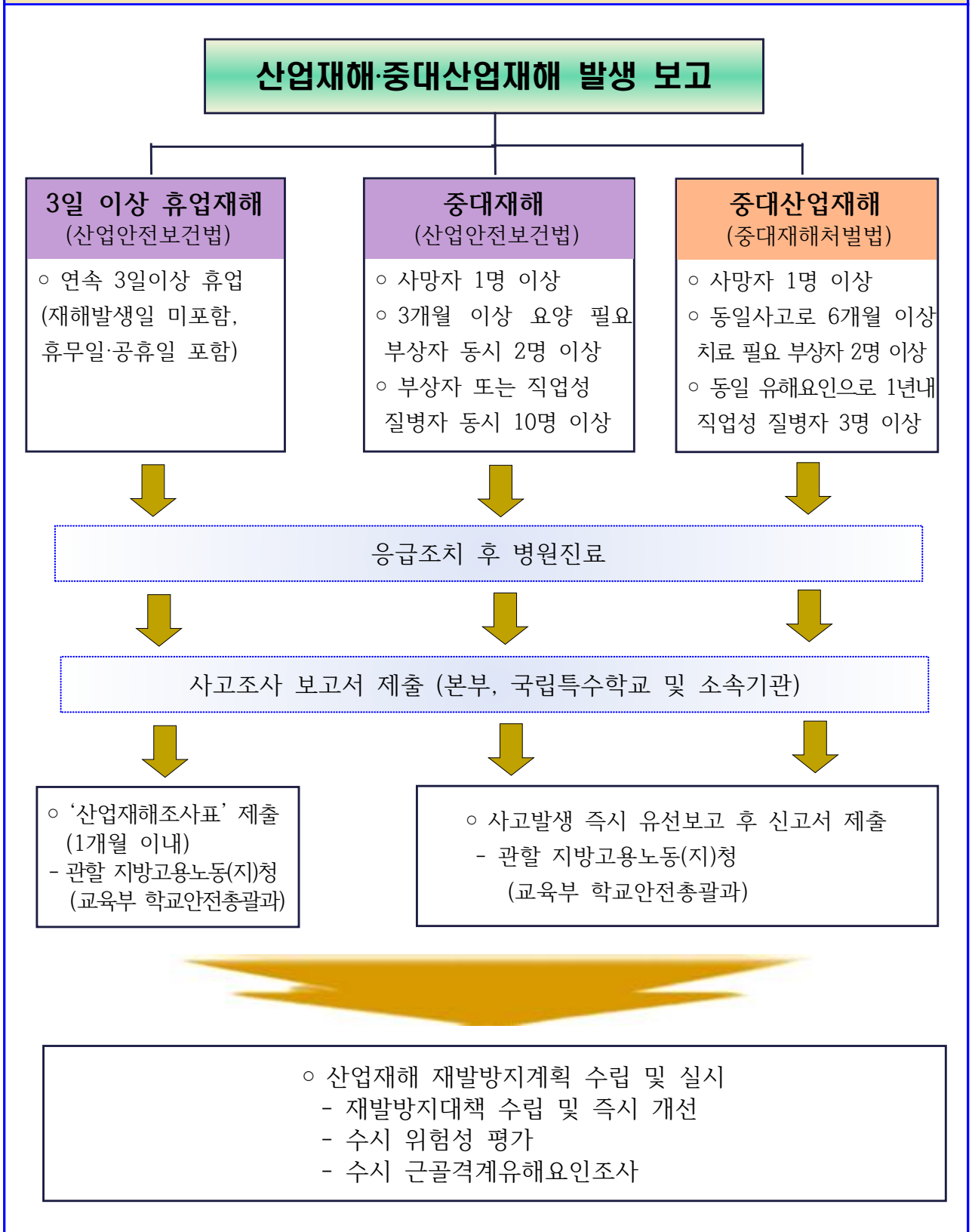
6. 비상 대응 체계



○ 비상연락망

구분	직급	연락처	비고
법인사무국	사무국장	02) 970-5201	
서울여대	사무처장	02) 970-5100	
	총무인사팀장	02) 970-5102	
	학생지원팀장	02) 970-5061	
	시설안전팀장	02) 970-5110	
	연구실안전관리센터	02) 970-5911	
	건축관재팀장	02) 970-5160	
	인권센터장	02) 970-5412	
	화랑초	교무실	02) 972-2261
행정실		02) 972-9681	
유치원	원감	02) 970-5354	
	행정담당	02) 970-5353	

[참고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참고 2] 산업재해 발생 시 산안법에 따른 조치 사항

- ❖ 기관(학교)은 소속 근로자에 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조치 등을 해야 하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 산재 발생 사실 보고(교육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①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환자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 연락하여 긴급후송
- (보고 및 현장)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 사고원인 등 조사 종결 시 까지 현장 보존

② 산업재해 발생 보고[교육부]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붙임3)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포함)

③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 사실 기록 및 보존 사항(3년간 보존)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

④ 재해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의 일반적 순서

① 단계	▶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		
② 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		
③ 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④ 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은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참고 3] 밀폐공간작업 절차 및 대응 조치 사항

① 작업전 사전조사 (관리감독자)

- 물탱크 등 작업공간 내부 최소 작업인원 결정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작업공간 내 부식상태(산소결핍 발생) 및 유기물 유무 등 확인

② 산소농도 측정 (관리감독자 및 작업관리자)

- 측정가스: 산소농도 측정(기준농도: 18% ~ 23.5%)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 존재로 부식되었거나 부식 진행 상태인 경우 유해가스 발생 의심
- 맨홀 상부, 중간, 하부 지점별 농도 측정

③ 환기실시 (작업관리자)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환기방법) 급기시에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 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
- (환기량) 맨홀의 경우 기적의 5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오수 또는 하수 맨홀 등과 같이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업 중에 계속적으로 환기 실시








④ 감시인 배치 및 인원점검 (작업관리자)

-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 시 마다 인원 점검
-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밀폐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감시자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설비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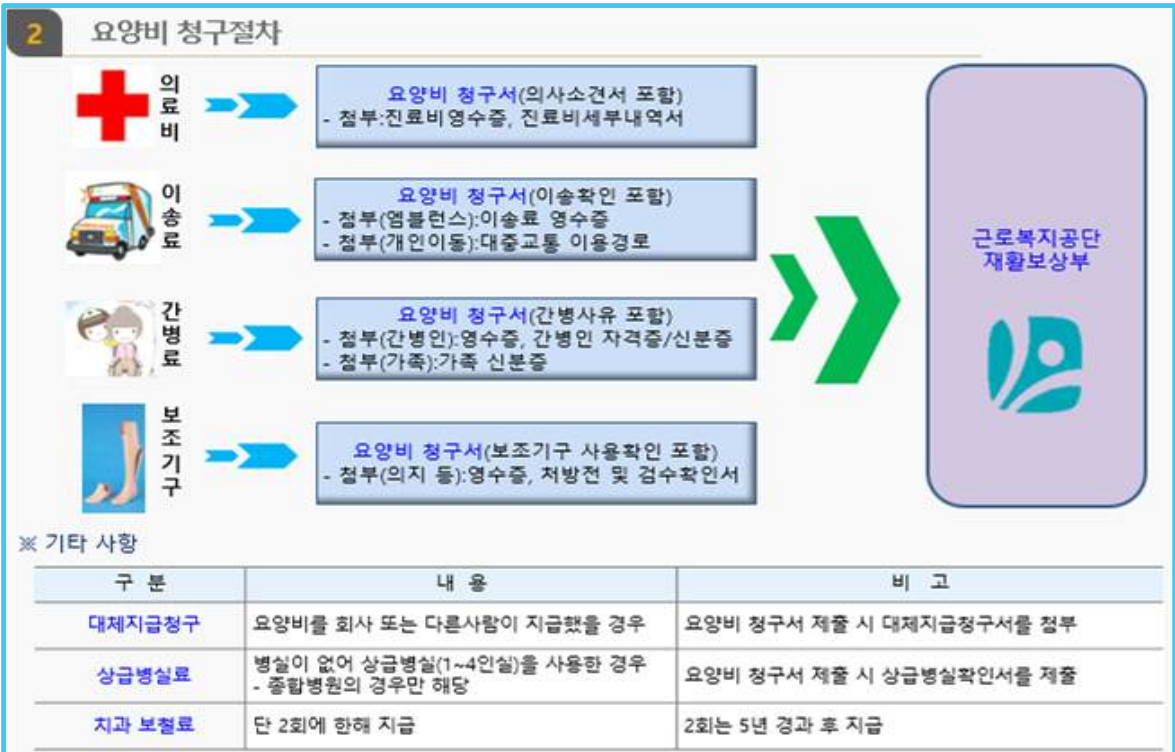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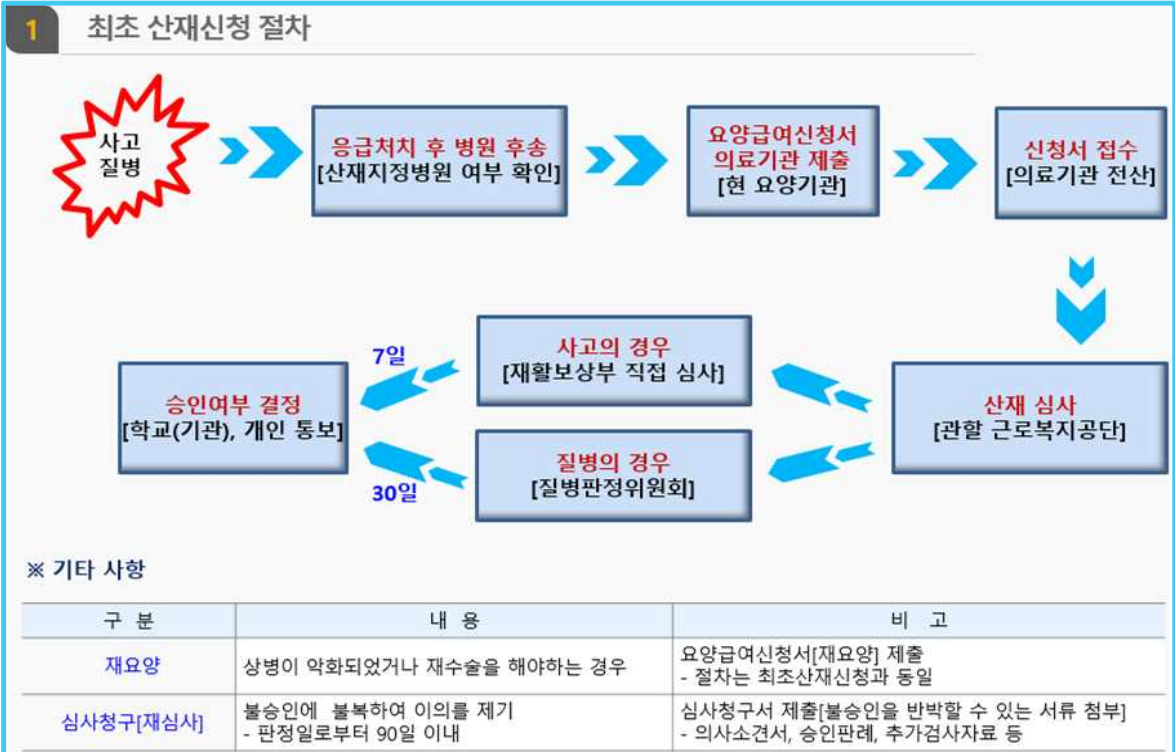
재해자 구조요령

- 밀폐공간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작업자에게 구조요청
- 작업공간 내 환기실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실시
- ※ 재해자를 구하기 위해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절대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서는 안됨

응급조치요령(심폐소생술)

순서	실시방법
반응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반응,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홍부 압박 (30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부압박 위치 확인 : 양 젖꼭지를 이은 중앙의 홍부부위 ○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꺾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 홍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 홍부압박의 속도 : 1분간 100회 이상 120회 미만의 속도 유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홍부압박 위치> <홍부압박 깊이> <홍부압박 자세> </div> </div> <hr/>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기도 유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손은 재해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압력을 가하고 ○ 다른 손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아래턱 뼈 부분을 머리쪽으로 당겨 기도확보 ○ 재해자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재해자의 코를 잡아 막고 ○ 재해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밀착시킨 뒤에 ○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동안 숨을 불어 넣음(2회) ○ 30회 가슴압박, 2회 인공호흡을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기도유지: 머리젖히고 턱들기> <인공호흡> <홍부압박&인공호흡 반복> </div> </div> <hr/>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홍부 압박 & 인공호흡 반복</p> </div> </div>
회복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중 재해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 호흡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 재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참고 4] 최초 산재 신청 및 요양비 청구 절차



※ ▲ 요양급여신청서[붙임4]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붙임5]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문서번호:

수 신: ○○고용노동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발 신: (전화번호:)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근로자 수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사망(명)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월)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4. 사고경위(육하원칙)

--

[붙임2]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조사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사고명			사고일시	
인적 피해	소속:	성명:	직급:	
물적 피해				
사고장소		상해부위		사고형태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내용				
의사/외부 전문가 소견				
재발방지 대책				
기타내용 사고조사 사진				

[붙임3]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 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 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입사일		년 월 일		⑪직업	[]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⑭근무형태		[]정상 []교대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⑲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 재해발생원인						

IV. ⑳ 재발 방지 계획					
-------------------------	--	--	--	--	--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사,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증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매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22년 0월 00일 0요일 00시 0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를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다
른
보
상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①합의서②판결문(또는 결정문)③영수증④기타

안
내
사
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문자, 전자우편, 감사편지)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5년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민간위탁기관의 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 또는 공단과 계약된 민간위탁기관의 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및 제공 목적	이용 및 제공 항목	이용 및 제공 기간
- 심리재활(희망찾기,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 직업재활(원직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3년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8. 12.>

※ 해당란에 [✓] 하고 기재하십시오.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① 성명(외국인은 영문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③ 재해일자 □□□□□□년 □□□□월 □□□□일
④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본원 []타 의료기관()		
⑤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		
⑥ 내원방법	[]도보 []구급차 []구급차외 차량 []기타()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⑧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년 월 일 (:) 최초 발생		⑨ 재해 당시 의식소실([]유 []무)
	증상의 내용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표현대로)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요 이학적·도수 검사 등) ※ 상세 소견은 별지 사용 가능			
⑫ 주요검사 []X-Ray []CT []MRI []MRA []심장혈관조영술 []Bone scan []PET []초음파 []내시경 []관절경 []근(신경)전도 []폐기능 []조직 []적외선체열 []정신상태 []심리학적 []기타·특이사항() ※ 주요소견 기재 또는 결과지 첨부			
⑬ 기존(기초)질환 고혈압([]유 []무) 혈압약([]미복용 []부정기복용 []정기복용) 고지혈증([]유 []무) 상병관련 가족력([]유 []무) 당뇨([]유 []무) 당뇨치료([]미복용 []약물복용 []인슐린) 결핵([]유 []무) 간염([]유 []무) []기타·특이사항() 재해 전 본원에서 유사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여부 []유 []무 기타·특이사항(일시·시술명·부위·의료기관)			
⑭ 상병명과 상병코드			
상해코드	주/부/파생	상병코드(KCD기준)	세부상병명(확정진단 병명)
<p>(상해코드) 두부(뇌/두개골/두피), 눈, 귀(내/외부), 안면부, 목, 팔, 손/손가락, 가슴/등, 허리, 엉덩이, 다리, 발/발가락, 복합부위,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신경계통, 복부, 전신, 기타 중에서 상병코드별 하나씩 기재</p> <p>(주/부/파생) 주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따라 주된 병태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병코드에 대해서만 가능</p> <p>(상병코드) 확진(최종) 진단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속하는 최하위 코드로 코딩하여야 하고, 병태의 외인을 설명하는 부연코드(대분류 코드가 V, Y, Z인 것)는 산재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병의 병태에 해당하는 코드로 코딩</p> <p>(오류예시) 하나의 상병으로 코딩할 수 없는 여러 상병을 하나로 표시하는 것,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상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M코드를 손상으로(또는 S코드를 질병으로) 코딩</p>			

(210mm×297mm, 일반용지 60g/㎡)

⑮ 입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유	[]수술 []의식장애 []외·기기고정 []석고붕대고정 []절대안정 []안정 및 보호 []이동 불가 []기타	

⑯ 통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 유		
	취업치료 여부(근무 병행치료)	※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의학적 판단) [] 취업치료가능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⑰ 수술	수술여부	[]없음 []있음	수술명	
	수술(예정)일	년 월 일	수술의료 기관	[]본원 []타원()

⑱ 계속 동반 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⑲ 집중재활치료의 필요 구분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재활치료로서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㉑6개월 이내의 뇌혈관, ㉒3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고관절·슬관절·완관절·수부 질환자, ㉓해당기간 도과했으나 재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제공, 단,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 일정기간 집중재활치료 곤란 [] 3개월 이내 치유 또는 13급 이하의 장해 예상 [] 집중재활치료 필요(또는 예정) [] 집중재활치료 질환자 아님 [] 상태 악화 또는 수술 예정 [] 집중재활치료 불필요()	

협진, 병행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심리상담 필요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필요
--------------------	--	-----------------------	-------

전원	전원할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원사유: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예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1.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1부. 2. 절단, 화상, 좌열장,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1부.(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산재관리 의사 여부: []산재관리 의사 [] 해당없음

전화번호:

의사면허번호:

호

팩스번호:

전문과목:

(전문: 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안전관리 점검 보고(매년 6월, 12월)

번호	점검내용	결과 (O, X)	해당부서	담당자	확인자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에 의한 산재예방 계획수립 유무				
2	산재예방 체계 구축 유무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 및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실적현황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진단, 관리) 여부				
6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산재통계, 기록유지관리대장 유무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에 따른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여부				
9	제3자의 도급·용역·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및 기타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10	구성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11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팀, 실장, 외주발주담당자)				
12	기계기구, 설비 안전점검 현황				
13	안전장구, 착용, 교육 지도 현황				
14	정리, 정돈, 통로확보 등 감독 현황				
15	안전교육일지 작성(도급, 용역, 위탁 등)현황				

▶ 실시결과에 따른 현황은 별첨, 미실시 경우는 사유를 설명

수신자 :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장